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1. 적용범위

이 부속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건전성 조치 예외⁷, 환율 및 금융 안정성

가.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 계약자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금융제도의 무결성과 안정성의 보장, 또는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⁸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⁹로 다음을 조건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1)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한다.

2)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의 경우, 그러한 조치는 필요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1년 이내 또는 조건들이 그 시행 또는 유지를 더 이상 정당화 할 수 없을 시 해제된다. 그리고

3)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의 경우, 그러한 조치는 최혜국을 기초로 적용된다.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서비스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정과 관련되는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공개를 당사국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국경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3. 투명성

⁷ 당사국의 영역 내에 설립되고 그 당사국의 금융감독당국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감독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치는 이 협정의 목적상 건전성 조치로 간주될 것이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조치는 이 항에 맞게 취하여진다.

⁸ 투기성 자본 유출 방지를 포함한 환율 안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는 어느 특정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 또는 유지되지 아니한다.

⁹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무결성 또는 금융적 책임의 유지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된다.

- 가.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 및 정책이 외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원활히 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서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 나.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가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규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 다.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을 한다.
- 1)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부속서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 2)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¹⁰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 3) 자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 마.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수립한다.
- 바.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필요한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 사.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관련 법과 규정에 명시된 시한 내에 신청자에 통보한다.
- 아.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80일¹¹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¹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1)목에 기술된 대로 사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들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전자주소이든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¹¹ 양 당사국은 180 일의 기간이 신청자가 관련 허가에 대한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 자.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청거부이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4.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 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항은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5. 신금융서비스

각 당사국은, 신금융서비스의 도입이 새로운 법 또는 규정의 제정 또는 기존 법 또는 규정의 수정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국이 자국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자국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당사국은 그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가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지며 그 인가는 오직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¹²

6. 데이터 처리

- 가.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자료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의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 나. 가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건전성 고려를 기초로 개인 자료,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정보를 이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자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7. 구체적 예외

- 가.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¹² 베트남의 경우, 합리적인 기간의 파일럿 테스트 후 그리고 베트남의 은행 및 금융제도의 발전 수준에 맞게 신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인가한다.

- 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이 통화 또는 환율 정책을 수행하면서 행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다.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그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그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그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 또는 서비스를 자국의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수행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의 국내 규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경쟁하여 그러한 활동이 수행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분쟁 해결

- 가. 제15장(분쟁해결)은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속서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 나. 제15.8조(중재패널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이 부속서에 따라 배타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패널과 중재인은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 또는 관행에 전문성 또는 경험을 가진 인이 된다.

9. 인정

- 가.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그 당사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른 쪽 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양 당사국 간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 나. 이 협정의 발효 시 또는 그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가호에 언급된 유형의 제3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그러한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들 간의 정보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10. 금융서비스 위원회

- 가.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융서비스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1)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2)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 중앙은행 및 금융부

또는 그 승계기관

나. 위원회는

1) 이 부속서의 이행을 감독한다.

2) 양 당사국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사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3) 이 부속서의 제8항에 따라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한다.

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11. 협의

가.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 결과를 보고한다.

나. 이 항에 따른 협의에는 이 부속서의 제10항가호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12.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가.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2) 재보험 및 재재보험

3)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4)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나.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 1)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 2)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 3) 금융리스
- 4)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 5) 보증 및 약정
- 6)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 가) 화폐시장 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 나) 외환
 - 다)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 라)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마) 양도성 증권, 그리고
 - 바)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 7)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8) 자금중개업
- 9)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 10)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 11)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 12)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1)목부터 11)목까지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금융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는 공급되는 금융적 성격을 가지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존 및 새로운 상품과 관련되거나 상품이 제공되는 방식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 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으로서 당사국의 정부,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 또는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상업적인 조건 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 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으로서 그러한 기능을 행사하는 때의 민간기관